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이윤원* 조세빈**

The Analysis of the Expected on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Lee, Yun Weon, Jo Se Bin

This paper analyzes the expected results when South Korea extensively adopts IAS for international acceptance of its accounting practice and accounting transparency. Based on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enefit of extensive IAS adoption in South Korea may exceed to the cost of IAS initiation in accounting practice and industry application.

The important research findings of this paper are stated as follows:

First, extensive IAS adoption in South Korea gives positive impact to its domestic companies for international financing and for lowering interest rate i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Second, by applying the same IAS for both the holding company and the subsidiary companies, global corporations can reduce their accounting cost, improve the internal communication, promote efficient financial report preparation, and rationali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ird, by relying on accounting information via same IAS, domestic investors and analysts in South Korea can easily understand and compare with the fundamentals of global corporations. This causes those global corporations to be listed with ease in the Korean stock market.

Fourth, since IAS is mainly for the listed companies, additional brief accounting standards specifically for the unlisted companies are necessary to reduce their accounting cost.

*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동아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Fifth and finally, global corporations are released to make duplication of accounting reports in USA and EU stock markets by adopting IAS.

Based on above important findings of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extensive IAS adoption in South Korea are beneficial to its companies and capital market. Therefore all interested parties in ISA need to fully understand the adoption process and thoroughly study over ISA before actually applying ISA for accounting practice in South Korea.

I.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사태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도 회계기준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국, 내외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다. 회계기준의 국제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회계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적 손실로 귀착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2006년 1월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2009년부터 부분적, 단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실시하게 되었다. 회계정보이용자는 개별기업이 보고한 재무정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경쟁 기업들의 재무정보와 비교하기를 원한다. 단일한 재무보고언어 즉 회계기준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가 간 서로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분석가와 기타정보이용자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 간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경제로 변하고 있는 지금 자산, 부채 그리고 비용과 수익을 측정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자본시장의 요구와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국제회계기준을 가능한 빨리 도입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내기업들의 적응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각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현황 및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분석,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예상효과를 문헌적 연구에 의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국제회계기준의 수용현황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 국제회계기준의 수용현황

회계기준의 통일화와 조화문제는 외국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과 채권의 상장, 다국적기업을 통한 국제무역의 확대, 외국자회사와의 연결을 요구하는 규제 등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가. 미국

미국은 연론의 회계부정 사태이후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비교가능성과 기준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IASB와 긴밀하게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FASB는 미국의 GAAP와 IASB의 IFRS를 일치화하기 위하여 규정준거에서 원칙준거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IFRS와 미국기준과의 차이조정 보고서를 2010년까지 제거하며 주식매입선택권, 퇴직연금, 금융상품 등에 대한 IFRS등의 등 모든 의안에서 잠재적인 수렴을 명시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회계기준의 일치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 EC

1995년 후반기에 유럽위원회(EC)가 유럽연합이 그 동안 견지해온 "독자적으로 유럽회계기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포기선언과 함께 IAS를 따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1년 6월 유럽연합 각료회의는 2001년 초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2005년 1.1부터 상장회사들에게 IAS와 IFRS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다. 호 주

호주의 회계기준은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 :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AASB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호주의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목표에 맞추어서 2005년까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AASB는 호주의 관련법규가 인용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IFRS의 내용과 문구를 원문대로 채택하였다.

라.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회계기준검토위원회 (ASRB : Accounting Standards Review Board)는 2004년 11월에 NZ IFRS (New Zealand Equival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를 제정하여, 2005년부터의 적용을 허용하고 2007년까지 모든 기업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ASRB는 기업이 기존 회계기준과 NZ IFR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시스템을 2007년까지 운영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회계기준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IFRS와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폐기하고 IFRS를 완전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IFRS의 완전수용을 통하여 극히 일부 회계기준에 국한된 차이가 초래하는 전체 회계기준에 대한 대외로 부터의 부정적인시각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

마. 일본

일본의 회계기준은 상법에 따라서 기업회계제도의 큰 틀이 세워졌다는 의미에서는 유럽형이다. 그런데 제2차 대전 후 일본은 미국 제도를 광범하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가 유럽의 자본시장에서는 그대로 통용되므로 별문제가 없었고 미국에서는 U.S GAAP에 준거해서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일본기업들은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을 무난히 해왔다. 하지만 국제적 조정 방향에 맞춰 일본은 IASB와 합의에 따라 2005년 3월에 일본에서 양 기준의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출범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비교적 논점이 경미한 재고자산, 부문보고 등 다섯 개의 회계기준을 공동프로젝트의 첫 단계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일본의 합치노력은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효과는 물론 일본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가. 공시부분의 비교

(1) 재무제표의 표시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은 계속기업 및 발생주의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또 계속기업에 관한 경영능력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반면 현행체계는 발생기준을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를 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되는 별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발생과 이연

1) 오준환, 김호중, 김성남 (2006.8).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p.35

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지분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에는 재무제표 작성 시 특별한 형식이나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차대조표 항목과 그 배열순서까지 예시하여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에는 재무제표 작성 시 필수적인 상세한 회계방침을 공시해야 하며 규정하지 않는 개별이슈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상 별도 항목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보충적 주석사항 및 부속명세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국제회계기준에는 대차대조표상에서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한다.

여섯째, 국제회계기준에는 중단사업손익을 경상이익에 포함하여, 중단사업손익보고방식으로 수평비교방법과 수직분리보고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단사업손익이 별도로 보고화되지 않는다.

일곱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자본은 지배회사지분과 소수주주지분으로 구성되며 지배주주지분은 주금납입금, 기타적립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본항목에 소수주주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2) 현금흐름표와 중간재무보고

④ 현금흐름표

IAS 7 현금흐름표의 목적은 일정기간 동안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의 형식으로 기업의 현금과 현금등가물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정보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중 선택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공시는 직접법을 권장하면서도 간접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접법과 간접법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대체적인 방

법으로 수정된 간접법(Modified indirect method)이 있다.²⁾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금의 구성항목에서 기업의 정책변경을 주식공시사항으로 요구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은행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상환 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의 경우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키며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좌차월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보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³⁾

② 중간재무보고

IAS 34 의 중간 재무보고의 목적(Interim Financial Reporting)은 매년 보고되는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다 자주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서 2호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중간재무보고의 구성요소로 정하고 있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제정으로 인해 중간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되어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경우 누적중간기간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였다.⁴⁾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중간재무보고의 필수요건에 대해서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현금흐름표, 요약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직전 연차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경우에 중간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모기업 등의 개별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중간재무제표는 직전 연차재무제표의 정보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경우에 이후 중간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 되어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재무보고는 적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연결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따

2) IAS 2004,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131

3) 한국회계기준원·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2007.5.11), 현행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4)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개정된 기준서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함

른 적시성의 저하와 비용부담 등의 이유와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관계로 중간재무보고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기업결합과 연결재무제표

① 기업결합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에서 기업결합은 기업 간의 합병, 다른 회사주식의 인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이하 생략)"라고 표현함으로써 기업결합으로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항상 지배를 획득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는 한 결합참여자가 다른 결합참여자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지 아니하면서 별도의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보고기업실체로 통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 함에 기존의 "기업결합"을 "사업결합"이라고 대체하고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⁵⁾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고 오직 매수법을 사용하여 사업결합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자산과 부채의 처리는 100%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그 감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을 재평가 한다. 취득되는 부의 영업권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손익을 인식하고 구조조정 비용은 취득시점에 부채의 범위에 한해서 인식한다. 반면 사업결합거래에 대하여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한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기업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합참여 회사 중 매수회사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결합은 지분통합 기업결합으로 한다.⁶⁾

② 연결재무제표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세계의 거대기업과 달리 그 동안 동일 그룹의 정보는 연결을 통한 정보보다 개별적인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용되었다.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은 주로 지배 회사의 주주 채권자의 효익을 위하여 지배 종속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을 보고하여 경제적 단일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 06-27.1호 "사업결합"

6) 한국회계기준원·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2007.5.11), 앞의 논문

국제회계기준에는 지배회사론에 근거해서 외부주주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기업실체이론을 대체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지분을 50% 초과 또는 지분을 30% 초과 최대 출자주주를 지배 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의 범위를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50%미만이라 해도 연결범위를 실질적 지배력기준에 따라 다른 투자 기업과의 협정에 의해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서 기업의 재무방침 및 영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경영기관의 구성원 및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경영기관의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된 IAS 27 는 종속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소액주주(minority interests)가 소유 혹은 이사회가 연결재무제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공적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것 중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발행의 절차가 없는 경우와 지배회사가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를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⁷⁾ 이처럼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은 2004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최초로 시행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제거,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등 연결회계처리 등을 중점으로 감리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주는 정보의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에서는 연결의 재무제표화 방안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시점에 맞추어 상장기업에 대하여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 하되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선택적용 기업은 200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회사는 2010년, 자산규모 2조원 미만회사는 2012년부터 작성하기로 한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보다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서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나. 대차대조표항목의 비교

(1)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프로젝트별 또는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개별

7) 김대호(2005),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원 회계학과, p.37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FIFO), 평균원가법(AVCO), 후입선출법(LIFO) 중에서 선택 적용하고 더욱이 재고자산의 원가에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위치와 상태로 오게 하는데 수반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의미하는데, 표준원가나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저가법의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은 종목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별 기준은 허용하지만 총액기준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은 유사점이 많다.⁸⁾ 따라서 재고자산의 분류와 다양한 공시정보 등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 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시 후입선출법을 인정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시 표준원가제도를 인정하나 단, 실제원가계산결과와 유사해야 하며, 표준원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의 원가결정시 표준원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으며 관리회계 상 표준원가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무회계 상으로는 실제원가로 전환된 금액으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시가의 결정은 순실현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순실현가능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재고자산의 손상, 진부화, 판매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평가손실로 계상한다. 또한 저가법 적용은 인정하지 않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며, 제품, 상품, 재공품은 순실현가능액을 시가로 보고,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를 시가로 본다. 또한 저가법 적용 시 종목별 및 조별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총계기준은 사용 불가능하다.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①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분류조건과 각 항목에 대한 구분분류조건, 그리고 기초와 기말 잔액에 대한 조정 등의 공시요구사항은 모두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면에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는 유형자산의 정의로 범위만을 규정할 뿐 세부적인 항목 구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기업회계기준에는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8) 서수덕 (2007), 한국,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 간의 비교분석, 국제회계연구 17집, p.97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 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분류와 공시에서 유형자산의 항목을 자세히 구분하였다.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유형자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항목들을 분리하여 단일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역사적 원가주의는 재평가에 의한 공정가액의 적용을 대체적 처리방법으로 허용하며, 대체적 처리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자산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자산재평가법에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재평가 대상자산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자산재평가의 실시를 불규칙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회계방법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자산재평가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불규칙하게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과 자본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공정가치를 선택하면 모든 유형자산을 매년 공정가치에 의해 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과 비교가능성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공정가치로 자산을 재평가한다면 자산과 자본이 더 크게 계상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큰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감소로 인해 손실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⁹⁾

셋째, 교환거래의 회계처리로 국제회계기준은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의 결합대가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모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하며 다만,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핍되어 있거나 취득하는 자산과 제공하는 자산 모두의 공정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은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종자산 간의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는 교환거래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에는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다섯째, 국제회계기준은 감가상각방법을 매 회계연도말에 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

9) 김지홍(2006), 앞의 논문, p.95-117

으면 "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는 감가상각방법의 주기적인 검토를 요구하지 않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변경"으로 처리한다.

② 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수명, 상각기간, 장부가 등 주요공시항목들은 무형자산 기준서와 국제회계기준 간에 주요 차이가 없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에 관하여 분류, 공정가치의 결정 등의 세부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서에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광업권, 어업권 등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무형자산의 항목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광업권을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 활동이 전문화된 추출산업의 탐사, 개발 등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는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분류할 때에는 무형자산에 포함한다.¹⁰⁾

기업결합에 의하여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국제회계의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영업권은 기업자산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예이고, 상표권, 특허권, 연구개발비 등도 무형자산에 속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에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의 변경과 상각방법의 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각기간의 변경의 효과는 전진적으로 처리(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하고, 상각방법의 효과는 소급하여(회계정책의 변경, 소급법)회계처리한다.

③ 리스

IAS 17 리스 회계에서는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적절한 방법과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리스회계의 적용대상 범위는 광물, 석유, 천연가스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과 특허권, 저작권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무형자산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

10) 정승미, "유, 무형자산 및 금융비용자본화", 월간경리, 2009.4월호, p.28

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회계기준서 공개초안에서 그 적용범위를 국제회계기준에서처럼 무형자산의 포괄적인 배제를 지양하며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에서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을 리스계약에서 배제하던 것을 일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명확한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인 반면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 75%를 초과할 경우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최저 리스료의 현가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도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90%이상인 경우이다.

④ 유가증권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중요한 규정을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이 제정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¹¹⁾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거래세 및 은행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하고,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단기손익지정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동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손익(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또는 자본항목(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동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손익(단기매매증권) 및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손익계산서 항목의 비교

11) 황상원(2008.4),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에 관한 해설", 월간경영리, p.16-17

(1)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의 변경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변경에 대하여 재무제표 상에 회계적사건과 거래를 더욱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회계변경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추정변경의 효과가 당기에만 미치는 경우 당기의 손익결정에 반영하고,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기와 미래의 손익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이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② 전기오류의 수정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오류의 수정은 당해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으며,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수익인식

국제회계기준에서 수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수수료, 이자, 배당금, 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을 거래형태별로 수익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거래형태별로 수익의 가득과정이 상이함에 따라 수익인식을 형태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의 인식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4 호 수익인식에서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거래의 형태에 따라 수익의 실현시점을 달리 정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3) 환율변동의 효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외국의 화폐성 자산을 대차대조표 표시일의 총가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제 68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재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총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 환산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적용한 환율은 해외거래시점의 최초환율로 기록하며 신뢰할 수 있으면 평균 환율의 사용을 인정한다. 매회기말에 화폐성항목은 대차대조표일의 마감환율적용하고, 역사적 원가로 계상된 비화폐성항목은 평가일의 환율로 적용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기업에서 적절히 적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환율을 적용하더라도 계속성의 원칙만 준수하면 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순 투자의 일부인 장기성 채권, 채무의 외환차이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순 투자의 일부인 장기성 채권, 채무의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4) 금융비용의 자본화

국제회계기준을 준거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7호 "금융비용 자본화"에서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초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자본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에 따른 영향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기업환경의 변화, 회계정책의 변화, 회계기관의 역할, 회계정보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기업환경의 변화

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자본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IFRS의 도입은 국내 상장사들에 한 미 FTA에 못지않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IFRS의 큰 원칙 중 하나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기업들이 IFRS 도입에 앞서 자회사의 지분율 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작성될 경우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부실 자회사나 적자 해외법인 등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모기업들은 이들 자회사의 퇴출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IFRS도입 로드맵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범위가 기존 30% 초과 최대 주주에서 50%초과 소유주주로 바뀌지만 ‘실질지배력’ 기준이 신설돼 특수목적회사(SPE)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부채, 손익구조 등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분율이 30%이상이나 50%를 초과하지 않았던 자회사들 중 모회사 재무제표에 긍정적인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는 추가지분을 확보해 ‘완전한’ 자회사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¹²⁾ 반면 부채규모가 크고 실적이 부실한 자회사는 매각이나 정리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경영전략 전반에 걸친 문제로 부각된다. 또한 자회사가 많거나 주식인수를 통해 성장해 온 기업들의 경우도 연결지배구조를 택하게 됨에 따라 향후 기업성장 전략으로 자회사의 지분율을 50%로 높여 연결 재무제표상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겠지만 자회사가 적은 상장사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적극적으로 합병하여 회사를 성장시킬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서 자회사 부실회계 책임도 모회사가 져야하기 때문에 ‘원바디(개별)지배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¹³⁾

나. 기업재무정보의 변화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따른 영향중 기업재무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외감법 시행령의 연결재무

12)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 파이낸셜 뉴스 (2007.4.8)

1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파이낸셜 뉴스 (2007.5.4)

제표 작성자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범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결합시점에 지배, 종속관계가 결정되므로 순환하는 형태의 지배, 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를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한 간접소유지분율만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지분범적용대상 투자주식의 범위가 축소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재무제표 구조에 대해 최소한만 정하고 대부분 기업의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현재보다 저하될 수 있으나, 기업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재무제표 표시로 현재보다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의 투자부동산의 평가는 취득원가법으로 평가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공정가치법과 상각후원가법의 선택적 적용방법을 허용하게 되면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며 공정가치 정보를 구하기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다섯째, 기업회계기준에서 총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원유출가능성이 약 80% 이상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자원유출가능성을 50% 초과하는 경우에 총당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채를 인식하는 금액과 범위가 확대되어 도입초기에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의 저하 등이 예상된다.

여섯째,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일시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총당부채로 설정한 반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미래예상퇴직시점의 예상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등을 추정하여 퇴직금지급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총당금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퇴직급여총당부채가 증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기업회계기준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요소별 주식 공시 범위가 제한적이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위험요소별로 광범위한 주식 공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국제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자산손상에 대한 엄격한 회계처리로 기업 실질이 더 잘 반영되어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손상검사를 충실히 수행하는 부담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전체 상장기업의 60%가 PBR이 1미만에 해당하여 거의 매년 손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비용발생이 예상된다.

아홉 번째,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회사가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을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기업의 부채와 비용을

충실히 표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말에 측정하여야 하는데,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열 번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출자증권을 부채와 자본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없어 상법상 분류에 따르는데, 자금조달형태(주식, 채권 등)보다는 조달자금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예, 상환우선주)의 경우 부채로 분류되므로 회계적 자기자본 감소(부채비율 증가)가 예상된다.

열한번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기재의 예에 추가적 정보제공을 요구하는데,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 구체적인 주식 공시 요구가 없는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게 되면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식공시 내용이 국제적으로 정합하는 효과가 있고 공시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열두번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재고자산의 평가 시 후입선출법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세무회계상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 공시체계의 변화

IFRS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제도하의 재무보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미국, EU국가들의 경우 자본시장의 환경 및 제도가 유사한지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는 주식시장에서 원칙적으로 개별회사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고 연결회사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연결실체의 주식은 없고 개별 주식이 거래된다. 그런 제도적 문제점을 먼저 해결한 후에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를 전환하게 되면 지배회사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의 비재무적인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고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도 포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지배회사 입장에서 국내외 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모회사 결산시기에 맞추어 입수하여 연결결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지분법 회계를 수행하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분반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비상장종속회사의 분반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아 분반기에는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결상장회사의 종속회사의 경우 분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검토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기업가치의 변화

IFRS 전면 도입은 국내 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IFRS의 큰 원칙인 '연결'과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 평가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급변하는 상장사들도 속출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을 장부가치에서 시가로 산정할 경우 자기자본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자회사나 해외법인 실적도 연결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게 됨에 따라 기업의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의 재무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며 특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통화가 달러이거나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에 변동이 생기며 해외 영업으로 흑자를 내고도 환율변동으로 인해 적자를 내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실제로 STX 팬오션은 지난 2005년 7월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하면서 회계기준을 IFRS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4억 400만 달러에서 3억 64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¹⁴⁾ 이는 해운, 항공사 등 외화부채가 많은 상장사들의 경우 자기자본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 퇴직급여충당부채, 상환우선주 등의 평가기준도 바뀌게 돼 지금보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기자본비율(BIS)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며, 특히 보험업종의 경우 보험계약기준서가 바뀌게 되면 보험부채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마. 기업의 비용 부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EU의 기업들도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부채가 급증하거나 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기업가치의 하락이나 채권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¹⁵⁾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 없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비교적 중소규모인 상장기업들의 경우도 국

14) 자본시장 FTA 국제회계기준, 파이낸셜뉴스 (2007.4.9)

15) 김지홍(2006), 앞의 논문, p.112

제회계기준 자체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감사인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과 같이 회계기준 도입과정에서 기업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간 및 비용이 과다해 질 것 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철저한 검토와 함께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한 충분한 사례조사가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시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수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회계정책의 변화

가. 회계기준 해석의 존중

국제회계기준은 완결된 회계기준이 아니며,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서로서 기업과 감사인의 회계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유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FRS가 도입되면 회계기준 해석을 감독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맡게 된다. 그러나 국내 감독당국은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일관된 회계정보를 요구하고 때로는 정부 정책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¹⁶⁾ 이에 기업과 감사인은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어느 수준만큼 부여할 것인지와 함께 감독목적 및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일관된 회계처리를 요구할 경우 기업들이 IFRS에 맞는 보고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개별 기업이 시스템 구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장 외감법인의 경우 상장기업에 비해 회계기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하는 이중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나. 국제회계기준 적용 및 K-IFRS 제정

국제회계기준의 원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적용단계에서 영어권이 아닌 우리의 경우에는 실무응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될 것이다. 그러나 우

16) 자본시장 FTA 국제회계기준, 파이낸셜뉴스 (2007.4.11)

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IFRS를 그대로 번역하여 K-IFRS 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영어의 한국어 번역에 따른 문제점이 가장 크다. 현재 IFRS를 수용한 대부분 나라들은 영어권 국가이거나 영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자국어가 언어체계에 있어 영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국가들로 국내에서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IFRS 의 경우 문자 그대로를 직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언어적 차이로 인한 오역 및 오해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IFRS를 K-IFRS로 번역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부여해야 하는지가 큰 과제이다. IFRS는 principle-based standard 여서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오히려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거래형태 및 상거래관행을 어떻게 해석하여 회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및 질의회신이 충분히 발행되어 실무적인 회계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관건이며 국제회계기준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한국어 번역의 공표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¹⁷⁾ 또한 별도의 해석이 제공되거나 질의, 회신을 통하여 실무회계처리방법이 제시되는 경우 이에 따른 회신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법적 권위의 부여도 필요할 것이다.

다. 법령 개정

IFRS를 도입해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국내 법률이다. 특히, 상법,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증권거래법 등과 많은 부문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와 국내법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회계기준이 기업들의 규제에 목적이 있는 반면, IFRS는 시장이 원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향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회계실무자나 자본시장이 상환우선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법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상법은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보고 있으나 IFRS에서는 부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현재는 재무제표 중의 하나로 규정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IFRS는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제한된 보고서 정도로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IFRS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하나인 '실질지배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현행 외감법 시행령에서 연결범위를 다 담아 낼 수 있는냐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정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¹⁸⁾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17) 주인기·김지홍·장명 외 2인(2006), 회계기준 최초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p.19

정착을 위해 법령개정은 시급하다.

3. 회계기관의 역할

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IASB)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해석 또는 질의회신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회계기준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 제정기구로서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¹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 작성 과정에 전문가를 제대로 파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입장이나, 앞으로는 인적, 재정적 측면에서 국제적 참여 정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과 정부는 실행 목표일을 포함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확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연결납세 제도의 조기 시행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비용 부분에서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계정과목의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업 공시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줄여 주어야 한다.²⁰⁾

회계기준원은 기존 업무 외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번역과 실무지침의 제공, 교육 등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의 증가로 수행해야 할 역할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에 대한 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내 회계기준의 국내외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회계기준원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나. 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회는 국내 회계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구 및 협회들이 적정하게 운영,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18) 파이낸셜 뉴스(2007.4.10), 자본시장 FTA국제회계기준

19) 서정우·문점식·김정국(2003),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전략, 한국회계연구원 연구보고서

20) 국제회계기준 IT적 대응, 디지털타임스(2007.4.16)

하며,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한국어 번역의 공표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인증 또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인이 적절한 품질관리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부실 감사인에 대한 심사 및 징계 조치 등 자정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부적절한 회계 관행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²¹⁾

다. 회계학계

선구적 교육자, 폭넓은 연구자, 그리고 공정한 평가자로서 회계학계의 역할이 요구된다. 먼저 대학에서 회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비한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직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폭넓은 연구 활동을 위해 실무에 관련되는 연구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저널을 창간하는 등 필요한 연구주제를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감독당국 등이 포함되는 실무계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평가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 제정에 깊이 관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상시 연구팀을 설치하고 실무계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실정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²²⁾

4. 회계정보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제 자본시장의 진출 및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자본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트위디(David Tweedie)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장점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모회사나 자회사 모두 단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므로 회계담당자의 채용원이나 내부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되며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금조달 비용도 절감되며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1년까지 상장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금융당

21) 송인만·이창우·이갑재(2007),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p.96

22) 이창우(2007.5),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회의 역할

국의 도입 일정에 대해 “유럽도 도입 결정 이후 의무적용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고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보다 준비단계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 며 “아주 적절한 일정” 이라고 평가했다.²³⁾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한국기업들의 투명성 제고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 2011년부터 자산규모 20억 달러 이상의 한국기업들은 재무보고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금감위 발표를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가 저평가된 한국이 해외 투자자들을 손짓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한국을 등지고 중국과 인도로 건너갔던 외국투자자들이 낮은 가치평가, 수익전망 개선,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 매력에 끌려 대거 돌아오고 있다는 희소식이다. 특히 투자자들 대부분이 주로 중국에서 U턴한다는 메릴린치의 조사결과는 더욱 의미가 깊다. 종전의 가격 중시 투자스타일에서 가치평가 중시 투자전략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을 긍정적 투자대상으로 여긴다는 것과 최근 세계증시 동반폭락사태에도 한국증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끝이 보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효과를 말해준다.²⁴⁾

또한 국내에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들과 세계 각지에 종속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원가의 절감, 조직 내의 의사소통 개선, 재무보고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정 개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국내 투자자와 재무분석가가 국내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들의 재무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외국기업들의 국내증시 상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 데이비드 트위디 국제회계기준 위원장, 연합뉴스(2007.3.15)

24) 한국경제 (2007.3.19)

25) PricewaterhouseCoopers., Making the change to IFRS

V. 결 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상당부분 도입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대외신뢰도가 저하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해외증시 상장기업 등은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도입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및 도입의 효과를 제안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의 내용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의 환경과 필요성,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기업회계기준의 비교분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예상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과의 주된 차이로 공시체계의 차이, 평가방법의 차이, 법률 및 정책 목적에 따른 기준 차이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망설여질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회계기준의 효익은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혼란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수치의 진위에 대한 투자자의 혼동을 제거하며 회계전문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해외에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 기업들이 국제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원가의 절감, 조직 내의 의사소통 개선, 재무보고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정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국내 투자자 및 분석가가 외국기업들의 재무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상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²⁶⁾

넷째,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마련

된 것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회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미국, EU 증권시장에서 재무 서류의 회계기준 차이조정 의무가 면제 가능하므로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회계장부 작성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한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그리고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물론 상당한 사전계획과 실행기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및 제도회계의 발전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실무에 작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과정에 있는 시점에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적·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객관화시키는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음을 본 연구의 큰 한계점을 밝힌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실무상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며,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회계투명성 변화에 끼친 영향을 실제 자료로서 분석한 실증연구,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 주인기·김지홍·장명 외 2인(2006), 앞의 논문, p19

참 고 문 헌

- 김지홍(2006),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대응방안, 삼장협연구, 53(1), 95-117
- 김형순(2006), 연결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
특별호, 33-53
- 박광훈·이명곤·박종일·박종찬(2005),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한국회계기준원 연구보
고서, 17
- 서정우·문점식·김정국(2003),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 전략, 한국회계연
구원 연구보고서
- 오준환·김호중·김성남(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2),
31-58
- 이명곤·한봉희·이홍섭·오기원(2004), 회계비전의 구현 및 회계기준 국제화 전략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연구원 연구보고서, 16
- 장지인·정문오(2001), 회계기준제정을 위한 준거원칙으로서의 국제적 정합성, 회계저널,
8(2), 139-158
- 정문오·이창우·황이석(2007),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현황 및 미래를 위한 전략, 한국회계기
준원 연구보고서, 20
- 조장연·강병민(2003),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2(1), 153-175
- 주인기·김지홍·장명 외 2인(2006), 회계기준 최초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기준원 연구
보고서, 19
- 한국회계기준원·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2007.5.11), 현행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
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 GAAP Convergence 2002, International Forum for Accountancy
Development: IFAD*
- IAS 2004,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PricewaterhouseCoopers(2003), Making the change to IF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2006), A Comparison of IFRS and Korean GAAP*